

2019.9.1.자 교장공모제 희망 여부(안)

안건 번호	1
----------	---

발의년월일 : 2019. 5. 10.

제안자 : 학교장

담당자 : 최지영

1. 제안 이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의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임기 만료 사유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공립 초등학교로 전라북도 교육청의 2019.9.1.자 교장공모제 가(假)지정학교로 통보되었기에 희망여부를 묻고자 함

2. 제안 근거

▣ 2019.9.1.자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교원인사과-10080(2019.5.9.)]

3. 심의 사항

2019.9.1.자 교장공모제 가(假)지정학교로 통보되었기에 희망여부를 위한 심의를 하고자 함

4. 교장공모제 추진 절차

❖ 공모교장 시행 안내(공모교장 임용권자) ⇒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장공모제 신청(학교) ⇒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 지정(공모교장 임용권자) ⇒ 교장공모 공고(학교, 공모교장 임용권자) ⇒ 공모교장 지원자 접수(학교) ⇒ 1차 심사(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 2차 심사(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 단수 임용추천(공모교장 임용권자) ⇒ 임용제청(교육부 장관) ⇒ 공모교장 임명(대통령)

붙임 2019.9.1.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 1부. 끝.

2018.3.1.자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요약서)

1. 실시 근거

- 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공모 교장의 임용·평가 등)
- 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 라. 공모교장 등 임용업무 처리요령 [교원정책과-5774(2018.11.5.)]
※ 기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적용
마. 2019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 [교원정책과-5774(2018.11.5.)]

2. 실시 학교 지정

가. 공모신청 가능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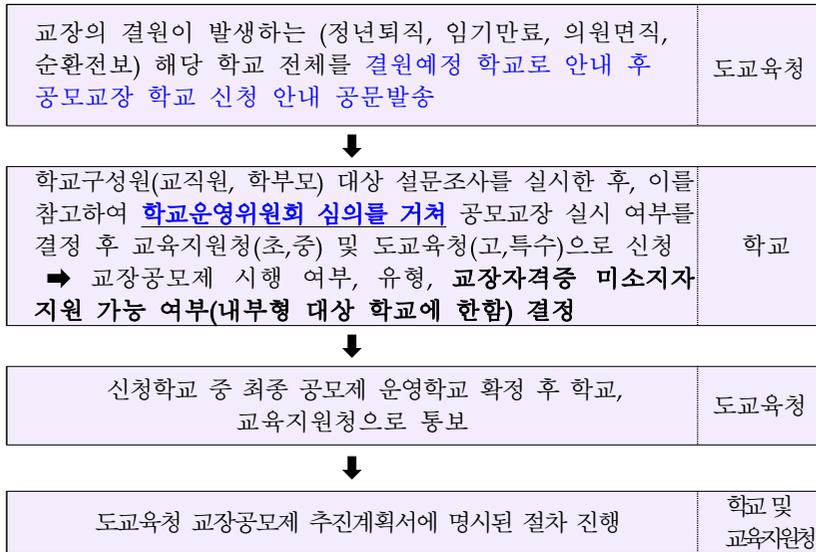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의 각급 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순환전보 등의 사유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공립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나.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지정

1) 교장 결원(정년퇴임, 중임만료)이 발생하는 학교 수의 2/3 범위 내에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지정

학교급	교장 결원 학교 수	교장공모 실시 가능 학교 수	비고
초등	16교	12교	상반기 기지정학교 3교(내부형) 및 상반기 지정 철회학교 1교 포함
중등	14교	10교	
계	30교	22교	

- 2) 학년도(1년)를 기준으로 교장 결원 수에 따른 공모 학교를 지정하며, 당해학기 공모 학교를 지정 철회하는 경우 해당 학교 수 만큼 이월하여 다음 학기에 타 학교를 지정, 공모 추진
- 3) 공모 대상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 소외·낙후지역 학교, 공모교장 희망·선호학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 등을 우선 지정



4) 지정 절차

-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이 공모교장을 임용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 제2항)
- ※ 신설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공모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정 신청을 할 경우 장관이 예외적으로 공모 학교로 지정가능

※ 구체적인 공모교장 요건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의견수렴 시 반드시 공모교장 유형별 자격 등 교장공모제에 대한 기본 정보를 함께 제공), 학교 교육과정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내용을 명기하여 교육청에 지정 신청

3. 교장공모 유형별 자격 요건

가. 초빙형

- 1) 신청 가능 학교: 결원 예정 학교 중에서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수목적고와 특성화 중·고를 **제외한 학교(일반학교)**

- 2)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
- 3) 임용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자를 포함

나. 내부형

- 1) 신청 가능 학교: 결원 예정 학교 중에서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 2) 신청자격
 -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
 -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원, 또는 양 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교장자격 미소지자)
- 3) 교장자격증 미소지 교육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는 학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희망학교의 수에 따라 추후 결정**(교장자격증 미소지 교육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는 학교는 내부형 공모제 신청 학교 수의 50%를 초과하지 못함(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6 제2항))
- 4) 내부형 신청 학교의 50% 범위에서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교육감이 지정
- 5)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하도록 신청한 학교가 내부형 신청 학교의 50% 이하일 경우 신청 학교를, 50%를 초과할 경우 50%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정
- 6) 내부형 신청 학교가 1개이며 해당 학교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공모에 참여하도록 신청한 경우, 해당 학교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공모에 참여하도록 지정

다. 개방형

- 1) 신청 가능 학교: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학교(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
- 2)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교장자격 미소지자)
 -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

4. 공모교장의 임용권자

공모교장의 임용권(공모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 제외)은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감에게 있음

5. 공모교장의 임기

- 가. 임용기간: 2019. 9. 1. ~ 2023 8. 31. (4년 원칙, 일부 예외)
- 나. 공모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교장 1차 중임제한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3항)
- 다. 교장으로 근무 중인 자가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모교장 임용 이전의 교장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됨
- 라. 공모교장은 임기 중 인사조치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할 수 없음

6. 공모교장 임용 절차

❖ 공모교장 시행 안내(공모교장 임용권자) ⇒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장공모제 신청(학교) ⇒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 지정(공모교장 임용권자) ⇒ 교장공모 공고(학교, 공모교장 임용권자) ⇒ 공모교장 지원자 접수(학교) ⇒ 1차 심사(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 2차 심사(교육청 공모교장 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 단순 임용추천(공모교장 임용권자) ⇒ 임용제청(교육부 장관) ⇒ 공모교장 임명(대통령)

- 가. 공모교장 임용권자는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순환전보 등의 사유로 학교장 후임보충이 필요한 학교 중 학교여건, 교육여건, 학부모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교장 공모 실시학교 지정
- 나. 교장공모제를 희망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지정 신청해야 함(※ 결원예정학교는 반드시 신청여부에 대하여 교직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학부모, 교직원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장공모제에 대한 사전 안내
 -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실시하고,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조작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
 - 설문조사 시, 조사대상은 전체 가구수와 일치할 것

- 설문조사 회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3일 이상 확보할 것

- 다. 신청학교가 많을 때에는, 도서·벽지·농산어촌지역, 소외·낙후지역학교, 공모 선호학교, 정책적 배려 학교, 자율학교, 지역별·학교급별 안배 등을 고려 지정함
- 라. 공모제 정착 지원 방안: 당해 학교 배정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교사 초빙권 부여
- 마. 공모제(초빙형, 내부형)의 공모 범위는 전라북도로 함

※ 개방형의 경우 공모 범위는 전국임